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48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이수진 · 전진숙 · 김남희
남인순 · 백혜련 · 김 윤
백승아 · 강준현 · 최혁진
서영교 · 임미애 · 김병주
이주희 의원(13인)

제안이유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구조를 보면 남녀가 거의 동수임에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는 현격히 차이가 있음. 즉,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은 14.2%임.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비율은 각각 14.8% 및 25.0%이며, 시·도지사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 비율은 각각 0% 및 3.1%로 매우 저조함.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되,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7조제4항).

나.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되, 국회의원지역구에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5항).

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

하도록 함(안 제47조제6항).

라.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
의 100분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중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를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지역구에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본

문 중 “제47조제5항”을 “제47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를 “후보자등록 후”로 한다.

② 제47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후보자등록 후 여성후보자의 등록무효로 그 추천 비율이 위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2제5항 전단 중 “제52조제3항”을 “제52조제4항”으로 한다.

제192조제3항제2호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19조제2항 중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23조제1항 중 “제52조제1항·제3항”을 “제52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의무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③ (생 략)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u>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u>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u> <u><신 설></u>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각각 해당 정당</u> <u>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0</u> <u>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u>--- ---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u>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지역구에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u> ⑥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

<신 설>

제52조(등록무효) ① (생 략)

<신 설>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
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
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

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
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
·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
·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
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
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52조(등록무효)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47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
한 해당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
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후
보자등록 후 여성후보자의 등
록무효로 그 추천비율이 위반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47조제5항 단서 또는 같
은 조 제6항-----

-----또

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④ (생략)

⑤ 제52조제3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⑥ ~ ⑫ (생략)

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 ① · ② (생략)

는-----

-. -----후보자등록 후-----

-----.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52조제4항-----

-----.

-----.

⑥ ~ ⑫ (현행과 같음)

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 ① · ② (현행과

③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 한다. 1. (생략) 2. 當選人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생략) ④ · ⑤ (생략) 제219조(선거소청) ① (생략) 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政黨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 決定日부터 14日 이내에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 내지 第191條(地	같은)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 -----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19조(선거소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5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
---	--

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訴請人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 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 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自治區·市·郡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舉에 있어서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 회의원선거 및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第223條(當選訴訟) ① 大統領選舉
및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당
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
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
日부터 30日이내에 제52조제1
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
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

